

재단법인 공주시한마음 장학회 정관

[시행일 : 2007.12.20.]
[개정 : 2008.04.10.]
[개정 : 2010.03.18.]
[개정 : 2010.09.17.]
[개정 : 2011.04.11.]
[개정 : 2011.07.13.]
[개정 : 2013.04.03.]
[개정 : 2015.09.07.]
[개정 : 2015.12.28.]
[개정 : 2016.02.26.]
[개정 : 2016.06.21.]
[개정 : 2017.02.16.]
[개정 : 2017.06.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에 거주하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생활이 어려운 학생의 장학금지원과 공주시 소재 대학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장차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재단법인 공주시한마음 장학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한다.

1. 우수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2.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3. 교육경쟁력 연구비 지원사업 등
4.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5.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6.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7. 공주시 소재 대학발전에 관한 면학시설확충 및 연구비 지원사업
8. 관내소재 학교 면학시설확충 및 교사사기진작 등 사업

② 제1항의 사업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은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 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는 공주지역 출신 또는 관내 재학생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온누리공주시민으로 가입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처리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전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1. 기본재산의 과실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보조금 수입

3. 독지가의 기부금 수입

4.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의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 부담행위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 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법인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 14인
2. 감사 :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제1항 이사 중 공주시장, 공주교육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④ 제1항제1호 정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17조(부이사장)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하기 위하여 이사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부이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부이사장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6조 제3항의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 상호간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부이사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부이사장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부이사장도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임명된 부이사장 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에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과 관련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 의사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사무국 및 고문

제32조(사무국) ①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 직원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공주시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

제33조(고문) ①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이상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충청남도교육청에 귀속된다. 단, 잔여재산 중 공주시장이 출연한 장학기금은 공주시에 귀속한다.

제37조(시행세칙) 이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8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충청남도 내에서 발간하는 지역 언론매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제39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이전에 재단법인 공주시한마음장학회 발기위원회에서 행한 모든 사무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300,000,000원	
합 계		300,000,000원	

2. 기본재산의 세부 목록표

재산명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지적)	단 가	평가액	비고
동산(현금)	공주시 예산	1건	300,000,000원	300,000,000원	기본 재산
합 계	공주시 예산	1건	300,000,000원	300,000,000원	기본 재산

(별지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동산(현금)		10,000,000,000원	
합 계		10,000,000,000원	

2. 기본재산의 세부 목록표

재산명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지적)	단 가	평가액	비고
동산(현금)	공주시 예산	1건	10,000,000,000원	10,000,000,000원	기본 재산
합 계	공주시 예산	1건	10,000,000,000원	10,000,000,000원	기본 재산

(별지3)

설립당초임원 명부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이 준 원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303-1	4년 (재임기간)
이사	김 태 룡	공주시 옥룡동 56-5 대웅맨션 5-301	4년 (재임기간)
이사	고 광 철	공주시 신관동 613-1 현대(아)202-901	4년 (재임기간)
이사	김 상 학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79-2번지	4년 (재임기간)
이사	강 임 금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견동리 168-1	4년
이사	김 영 만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03-9	2년
이사	방 재 천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 곱나루(아) 104-808	4년
이사	서 광 수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 새뜸현대(아) 304-401	4년
이사	이 흥 복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80-5 대동다숲(아) 105-402	4년
이사	김 영 남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369	4년
이사	김 종 화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47	2년
이사	정 재 욱	충청남도 공주시 산 성동 27-11	2년
이사	조 관 행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57-11	2년
이사	진 충 현	충청남도 공주시 교동 175-7대우(아) 104-1002	2년
감사	정 순 곤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93 덕성그린타운(아) 101-502	2년
감사	신 현 오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259 새뜸현대(아) 404-701	1년